

인터넷실명제와 우회로의 선택:

인터넷 공론장 참여자들의 자기검열과 우회로 선택의향을 중심으로

한혜경* · 김유정**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본질적 속성인 익명성을 통제하여 이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법제도의 성패와 영향력은 이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해당 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때, 인터넷처럼 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선택대안이 존재하는 대상일 경우 이용자의 태도와 선택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와 이 제도가 가져온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의 성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온라인공론장의 참여도, 제도에 대한 태도와 환경인식, 여러 대안들에 대한 선택 의향 등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나이가 어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며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온라인공론장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실명제 유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온라인공론장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는 다시 여러 대안에 대한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결과, 온라인공론장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 및 관련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자기검열, 사이버망명, 서비스망명과 같은 우회로 선택 의사와 유의미하게 연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이용자 특히 온라인공론장 참여가 활발한 이용자층의 인식과 선택에 따라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인터넷실명제, 온라인공론장,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자기검열, 사이버망명, 서비스망명, 위계적 회피, 구조방정식모형, 우회로

1. 문제제기

익명성은 인터넷을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 특히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듣기도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표현까지도 자유로이 허용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익명성은 악플과 허위사실 등 인터넷을 무책임하고 타인과 사회에 해가 되는 발언들로 범람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와 공론 영역 구성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은 양면성을 띤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흔히 인터넷실명제라고 불리는 규제정책은 그 양면성 중 부정적인 측면을 통제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익명성을 제거하려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박경신, 2009; 황성기, 2008). 첫째 인터넷에 게시되는 모든 표현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이용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공개 게시판의 게시물에만 적용되며, 둘째 게시자의 실명이 공중에게 직접

*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hancon@pknu.ac.kr)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과정(eugeniek@yonsei.ac.kr)

드러나지 않는 대신 규제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그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게시판 운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3년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조항으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표적인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임에도 지속적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2003년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800여 개의 언론사 게시판이 그 적용대상이었으나 이후 이용자 규모 30만 명 이상, 2010년 이후부터는 1일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게시판을 모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¹⁾ 실제 이 법은 2010년 167개 웹사이트에 적용되었지만 2011년에는 적용대상이 146개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법 적용을 피해 소셜댓글 형식을 취한 사이트 수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찬성 진영에서는 이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상의 이 보장하는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익명성이 가져오는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명재진, 2003, 2009; 황창근, 2009; 권영준, 2006; 이시원, 2003; 강경근, 2003). 그러나 반대 진영에서는 이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데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반면, 관련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크게 침해하며 게시물의 대폭 감소 등 chilling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공론장의 위축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한다고 본다(박경신, 2009; 허진성, 2009; 황성기, 2008; 황용석, 2007). 법해석적 차원에서의 이 같은 상반된 해석은 경험적 차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후 악플과 허위사실 등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연구결과(이시원·민병익, 2002; 이현창 외, 2007)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우지숙·나현수·최정민, 2010)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해석학적 혹은 경험적 차원 모두에서 해당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상반된 견해를 견지하고 있으나, 두 입장 모두 인터넷 실명제 이후 인터넷 공론장에서 감지되는 변화를 제도 자체의 영향 혹은 결과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법제도가 관련 당사자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영향의 방향과 정도는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해당 법의 적용대상인 사람들이 그 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우지숙, 2005).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인터넷실명제가 의도했던 결과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법제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터넷처럼 법의 적용범위와 방식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할 경우 이용자들의 인식과 대응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실명제 실시 이후, 일부 인터넷 논객과 게시판 서비스업자들은 이 제도의 적용을 피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사이버망명’²⁾이나, 다수가 한 공간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공개 게시판이

1)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①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을 통해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이나 정보를 게시하려는 인터넷신문사 등 사업자는 실명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의 준용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르면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시판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 그 결과, 2011년 현재 146개 웹사이트의 게시판이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2010년에 157개 사업자, 167개 웹사이트였던 데 비하면 올해에는 약 14%가 감소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1.3.9).

아닌, 사적인 의견교환도구로 활용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댓글달기²⁾ 등은 적용대상자들 스스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우회로들이다. 이와 같은 우회로들의 존재는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진영에서 내세우는 주요 근거들이기도 하다(인권모음, 2010).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자면, 실효성의 정도를 결정짓는 것은 우회로들의 존재 자체라기보다는 그 우회로들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선택하느냐라고 할 것이다. 설사 다양한 우회로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보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잠금효과(lock-in-effect)⁴⁾가 세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용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김병운 외, 2008). 이는 우회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명제 적용범위를 확대시켜나가고 있는 규제당국이나 이 제도 적용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대다수 국내 인터넷업체들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우회로의 효과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규모’ 못지않게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회로의 존재를 저평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참여는 평등이 아닌 불평등을 특징으로 한다(조화순, 2008; 조희정·강장묵, 2008; Benkler, 2006). 인터넷 공론장은 끊임없이 공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는 소수와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다수가 공존하며, 이들 두 집단 사이에도 다양한 수준의 참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참여의 불평등은 기여 또는 영향력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설사 소수라 하더라도 인터넷 공론장을 주도하는 참여자들이라면, 이들의 태도와 반응은 인터넷 실명제의 효력을 크게 좌우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들이 이 제도와 그로 인한 환경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더 이상 우회로들을 기웃거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도가 기대하는 바대로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 과거보다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인터넷실명제는 별 무리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이들이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우회로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면,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이용자들의 특성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인터넷실명제와 이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인터넷 공론장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참여도,

2) 사이버방명은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나 도구를 그만 쓰기로 하고 그 대체제를 찾아쓰는 갈아타기 놀이를 지칭한다. 2008년 말 촛불시위 정국에서 널리 행해진 행위로, 전자우편과 같은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온라인 토론장과 같은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한국의 상업적 대형포털들이 제공하는 것들에서 구글과 같은 외국 사이트들의 도구로 대체하고자 했던 다양한 유형의 집단행동들을 지칭한다(인권모음(2010), 212호),

<http://hr-oreum.net/article.php?id=1508> 참조.

3) 소셜댓글은 이용자가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쓴 글을 불러와 기사 밑에 노출시키는 새로운 서비스 유형을 일컫는다. 2010년 4월 인터넷실명제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블로터닷컴에서 이에 대한 거부표시로 게시판을 폐쇄한 이후, SNS를 활용한 익명 댓글게시판을 도입하며 이를 ‘소셜댓글’이라고 명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한겨레, 20011.03.08). <http://www.hani.co.kr/popups/print.hani/?ksn=466931> 참조.

4) 잠금효과는 고객의 선택을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두어 놓는 효과를 의미한다. 김병운 외(2008). 『디지털화와 산업의 양극화』, 삼성경제연구소, p.57. 참조

제도에 대한 태도와 환경변화 인식, 그리고 여러 대안들에 대한 선택 의향 등이 맞는 관계의 경로와 방향 등을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경로들은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근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론적 논의

1)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인터넷실명제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영역은 표현의 ‘내용’이다. 표현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나 금지, 사전검열 입법은 많은 경우 위헌성 심사로 이어졌고 사법심사에서도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었다.⁵⁾ 그렇다면 행위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힐지의 결정이 과연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가? 학계에서는 그렇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표현 내용이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익명에 의한 표현 자체를 전면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⁶⁾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표현행위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저자로서의 자율성(authorial autonomy)’의 영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실명 강제는 표현행위자에게 해당 논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으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인정한 것이다.⁷⁾ 표현이라는 본질에 입각해본다면 자신의 실명을 밝힐지의 여부는 자신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제시하고 생략할 것인가와 마찬가지로 표현행위자 자신의 판단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 역시 일반적인 제한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점이다(성낙인, 2005). 익명적 표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로 인한 이익보다 지나치게 커서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 익명적 표현의 자유 역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익명적 표현행위에 대한 제약은 익명성의 제거, 즉 인터넷에서 의사표현을 위해 일정 수준 익명성을 포기하거나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며 ‘실명확인’은 그 대표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실명확인은 표현행위 이전에 표현 내용을 일정한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이므로 사전적 제약으로

5)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특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1.9.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헌법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자유권의 규제보다 엄격한 합헌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왔다. 예를 들어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제를 금지하는 사전억제(prior restraint) 금지 이론, 명확성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필요최소한의 수단 선택의 원칙, 비교형량(balancing test)의 원칙 또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원칙이 있다. 성낙인(2005), 헌법학, 제5판, 법문사, pp.70~73.

6) *Talley v. California*, 362 U.S. 60(1960);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v. Villiage of Stratton*, 122 U.S. 2080(2002).

7) “The claimed informational interest is plainly insufficient to support the statute’s disclosure requirement, since the speaker’s identity is no different from other components of a document’s contents that the author is free to include or exclude, and the author’s name and address add little to the reader’s ability to evaluate the document in the case of a handbill written by a private citizen unknown to the reader.” *McIntyre v. Ohio Election Commission*, 514 U.S. 334, 341(1995), p. 335.

분류된다. 이 사전적 제약의 정당성에 대해 인터넷실명제 찬성론자들(명재진, 2009; 황창근, 2009)은, 인터넷처럼 정보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사후적 피해구제가 실효를 거두기 힘든 환경에서, 타인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언론·출판의 자유 남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저지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박경신, 2009, 성낙인·허진성, 2010; 황성기, 2008)은 이 사전적 제약이라는 측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한다. 우리 헌법 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지점에서 보호의 한계를 지닌다. 그런데 인터넷실명제의 경우, 게시물이 타인의 명예, 권리, 도덕, 및 윤리를 침해하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게시자에게 사전에 신원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내용규제보다 더욱 심대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특히 익명권이 행위를 동반하는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익명적 표현은 타인에게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주지 않고도 설득을 통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발화행위라는 점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익명성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표현행위의 사전적 제약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는 또 하나의 지점은 프라이버시권이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이 두 기본권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표현의 자유를 익명 표현으로까지 확장시키려면, 그로 인한 보복이나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통신비밀과 사생활 보호 등과 같은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명제 찬성론자들(명재진, 2003; 황창근, 2009)은 인터넷 또는 인터넷게시판을 사적인 공간이라기보다 공공적 영역으로 간주한다. 접근가능한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에 들어온 이상, 이용자 스스로 내밀성이라는 의미에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일탈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환기한다는 취지에서 본인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인터넷실명제는 사생활 또는 통신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박경신, 2009, 성낙인·허진성, 2010, 황성기, 2008)은 인터넷에서도 신원주체가 자발적으로 밝히기 전까지 신원은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명제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그 행사자에게 신원공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는 물론 침해의 수단으로서 사생활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도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청소년음란물 규제 등처럼 강제적 실명제를 통한 사전적인 신원공개가 필요하고 정당화될 때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익명의 글쓰기가 이러한 행위들을 익명으로 행할 때만큼 위험한 행위는 아니며, 설사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글쓰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생활의 일부를 포기하고 본인확인정보를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인터넷실명제의 타당성,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리적 해석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태도와 반응을 토대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추론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연구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실명제를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진영들이 서로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양 진영의 대립은 더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가능한 기본권들로 간주하느냐라는 매우 오래된 논쟁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와 반응에서 이 두 기본권에 부여하는 가치의 차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인터넷에서 익명성의 규제 가능성: 우회로들의 효과

인터넷 TCP/IP 프로토콜은 과거 호환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시스템 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든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서⁸⁾ 데이터패킷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주소인 IP 주소들만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그 결과 레식(Lessig, 2006/2009)은,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는, 오프라인 공간이라면 의도적으로 창조해야 할 익명성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누군가 또는 특정 집단의 계획이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TCP/IP 프로토콜서)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의도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는, 오히려 기술에 내재된 속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제거할 경우, 즉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제한하려할 때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의 의도적인 개입이나 노력이 의도한 결과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바라바시(Barabassi, 2002)는 그 이유를 인터넷의 위상구조에서 찾는다. 인터넷은 비록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몇몇 사람 또는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용자들이 취하는 개별적 행동에 모두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와 같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라는 위상구조를 지니게 되었다.⁹⁾ 웹의 주요 특징들은 대부분 대규모인 동시에 자기조직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이 위상구조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인터넷과 같은 척도없는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링크 규모가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큰 노드들, 흔히 허브라 불리는 노드들이 다수의 소규모 노드들과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 허브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대부분의 노드들을 매우 밀도 높게 연결시키며 어떤 방향으로든지 짧은 경로를 거치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다. 이와 같이 허브와 소규모 노드들이 공존하는 인터넷 위상구조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집단의 의도적인 개입에 대해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우선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인터넷세계에 적용하려면, 그 세계로부터 특정 국가를 고립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 세계의 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세계에서 특정 국가만을 완벽하게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Lessig, 2006/2009). 특정 국가의 노드들과 연결된 모든 연결고리를 밝혀내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차단에 실패한 단 하나만의 통로라도 존재한다면, 그 통로를 통해 교환되는 정보와 자원이 내부와 외부 양쪽 진영의 허브들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키(Shirky, 2008)가 지적했듯이, 이는 인터넷 보급률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른 국가들 중, 어떤 국가도 정치적인 이유에서나 또는 윤리적인 이유 등에서 다른 나라의 사이트 또는 표현물 등에 자국민이 접근하는 것을 장기간에 걸쳐 완벽하게 차단하는

8) TCP/IP 프로토콜은 데이터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애플리케이션 등 총 4개의 층위로 구성된다. 이 중 네트워크 층위에서의 IP프로토콜은 호스트와 네트워크 링크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를 라우팅하고 데이터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며, 트랜스포트층에서는 TCP/프로토콜이 두 네트워크 소스간의 데이터 흐름을 중재한다. 이 층위까지의 프로토콜들은 함께 어울려 인터넷의 핵심적인 연결통로로 기능하는데, TCP 프로토콜은 각 데이터들을 패킷으로 나누고 패킷에 라벨을 붙이는 역할을 하고 IP 프로토콜은 그 패킷들에 보내는 IP 주소와 받는 IP 주소를 붙이게 된다.

9) 바라바시는 전체를 특징짓거나 대표하는 값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유형을 무작위(random) 네트워크와 구별해 척도없는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데 성공한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편, 허브들의 존재는 특정 국가가 인터넷을 규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토대가 되기도 한다. 바라바시(2002)는 다수의 허브들이 동시에 장애를 일으킬 때 평소 매우 견고해보이던 인터넷망도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허브들의 존재를 ‘인터넷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른다. 즉, 자국 사이트중 규모가 큰 사이트들을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은 자국 네티즌의 절대 다수를 그 영향권 하에 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에서 자국의 모든 네티즌들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들의 절대다수가 인터넷세계를 넘나들 때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관문 또는 길목을 통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일단 특정 국가의 사이트 중 그러한 관문이나 길목 역할을 수행할 만큼 이용자들이 집중되는 허브들의 수가 많지 않아 이들의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하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자국민에 집중된 상업 사이트들은 규모가 클수록 자국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손실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어떤 국가든 자국의 허브들을 규제대상으로 삼을 경우, 자국 인터넷 전체 이용자를 규제대상으로 할 때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도 그에 상응하는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서비스로 무장한 포털들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유형의 상호작용의 핵으로 자리잡았을 경우, 규제의 효율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처럼 국내 허브들을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하더라도 문제는 그것이 여전히 모든 한국 네티즌의 행위를 커버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인터넷에는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이 얼마든지 존재하는데, 그중에는 전 세계의 네티즌들이 공통적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국내에서만 허브라 불리는 사이트들보다 규모가 훨씬 큰 사이트들도 다수 존재한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국내 네티즌을 이들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이버망명’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이러한 우회로를 국내 네티즌들이 실명제를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들에 저항하는 데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실명제를 근간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들이 강화되고 포털들이 그러한 정부방침을 수용하면서, 익명으로 정부비판 글을 올린 행위자들에게 대한 법적 제재가 본격화되고 프라이버시 영역이라 여겨졌던 개인의 이메일 등 통신내용까지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이버망명은 이에 대한 반발로 일부 국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실명제를 수용한 국내 포털들의 메일이나 토론 커뮤니티를 떠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사이트로 자신들의 근거지를 이전했던 일련의 움직임들을 통칭한다. 운동 초기에는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메일이나 블로그 주소를 해외사이트로 옮기는 형태를 띠었으며, 2009년 구글이 유튜브 한국사이트에 대해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자 한국 정부에 맞선 구글의 결정을 옹호하며 자체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망명 사이트를 만들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으로까지 전개되었다.¹⁰⁾

한편 국내 인터넷규제에 대한 우회로로서 사이버망명의 효과는 실제로는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망명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이 온라인 세계에서도 익숙한 국내 사이트를 떠나 생소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국어와 친숙한 사용환경, 그리고 오랜 기간 상호작용한 이웃들과 그들로부터 얻은,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명성을 포기해야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높은 전환비용은

10) 사이버망명 관련 내용은 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2010. 7. 21). <<인권오름>>, <http://hr-oreum.net/article.php?id=1508> ; 사이버망명 바람 솔솔. 강풍될까. (2009. 4. 12). <<연합뉴스>>; 남경필 ‘검찰이 인권침해’... 정두언 ‘나도 지메일; 사용’. (2009, 06. 12). <<프레시안>> 등 참조.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인터넷세계에서 이용자들을 기존 사이트나 서비스에 묶어두는 잠금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김병운 외, 2008). 인터넷세상에서도 망명은 이 높은 전환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만큼 절실한 동기 없이 실행하기 어려운 행위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사이버망명 운동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극히 일부 논객과 토론 커뮤니티 적극이용자 등만이 참여했을 뿐, 일반 이용자들까지 그 참여가 확산되지는 못했다(연합뉴스, 2009. 4.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망명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는 국내법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첫째, 일반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세계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들이 존재하며,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시켰다는 점이다. 일단 우회로의 존재와 그 방법이 널리 알려진 이상,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면, 일반 이용자들로까지 참여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셈이다. 따라서 현재는 참여자 규모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2009년 검찰이 PD수첩 제작자들의 국내 포털계정의 개인메일 내용들을 공개하자 일부 여당 정치인들까지 사이버망명을 거론했던 것은 그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프레시안, 2009. 6. 12).

둘째는 이 운동을 주도했던 계층이 인터넷 공론장을 비롯해 사이버세상에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주도하는 적극적 이용층이라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 적극적 이용층이 해외사이트로 주 활동무대를 옮기면, 그리고 일반 이용자들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연합뉴스, 2009. 4. 12).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국내업체들도 외국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또는 저항할 수 있으며, 이는 허브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자국 네티즌들의 글쓰기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사전에 제약하고자 하는 이 법을 시행조차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이버망명이 이용자 집단이 발견하고 시작한 우회로라면, 소셜댓글은 인터넷실명제의 직접적 적용대상인 인터넷업체로부터 시작된 우회로다. 2010년 4월 국내 정보기술 온라인매체인 블로터닷컴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실명제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자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실명 확인 뒤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게시판을 폐쇄했고, 이후 석 달 뒤인 7월에 페이스북·미투데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익명 댓글 게시판인 ‘소셜 댓글’ 서비스를 내놓았다. 2011년 3월 현재, 각 언론사와 일부 공공기관, 정치인 누리집 등 110여 곳이 소셜댓글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전문 소셜 댓글 서비스업체들도 여럿 생겨났다(한겨레, 2011. 3. 8).¹¹⁾ 이처럼 실명제 적용을 피해 소셜댓글 서비스를 선택하는 업체들이 증가하자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했으며, 2011년 3월 최종적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실명제 적용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 개인홈피, 카페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이기 때문이며, 이들을 활용한 소셜 댓글서비스에 대해서는 SNS의 특성과 신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1. 3. 9).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은 SNS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11) 방통위, 시대착오적 인터넷실명제 사문화. (2011. 3. 8). <<한겨레>>.

<http://www.hani.co.kr/popups/print.hani?ksn=466931> 참조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다. 만약 정부가 소셜댓글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차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국외 서비스에 올린 사용자 댓글을 자동으로 불러와 기사 아래에 노출시키는 소셜댓글에 실명제를 적용하려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업체들에도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 유독 한국 이용자만을 위한 ‘실명확인’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한겨레, 2011. 3. 8).¹²⁾ SNS의 성격이 사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와 같은 댓글서비스는 기존의 게시판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업체들이 해외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규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소셜댓글이 실제로 실명제를 얼마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정부 정책 자체라기보다는 이용자들의 선택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회로가 존재하고 이 우회로를 선택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인터넷실명제가 그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셜댓글 서비스를 실시하는 업체와 SNS 이용이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정부의 당초 의도대로 이를 사적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활용할 뿐, 실명제를 우회해서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을 지키는 도구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소셜댓글이라는 이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낸 우회로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 우회로 역시 사이버망명처럼 인터넷실명제라는 국내법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실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지는 이용자들의 태도와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공허한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

3)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 자기검열과 우회로 선택의향의 교차효과

인터넷실명제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법한 표현행위를 한 인터넷 이용자를 추적하여 처벌 또는 책임을 지우게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 악플을 줄이거나 사이버문화를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그나마 일관성있는 결과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정보통신부에서 의뢰한 정부용역보고

12)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구글은 ‘한국’으로 국가설정을 하게 되면 댓글이나 동영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글을 자사 공식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평소 구글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는 보다 많은 선택과 자유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이라는 게 저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경계선을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과 문화규범이 각기 다른 10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략) 구글은 인터넷 상에 무엇이 보여지고 안 보여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재자가 아니며, 결코 구글이 그런 역할을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정은 법원과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중략) 저희는 또한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률이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복잡한 상황도 직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나라마다 그 관용도가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는 실제로 기술적인 도전과제가 됩니다. 즉, 특정 콘텐츠가 어떤 국가에서는 나오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저희는 특정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도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서에 의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한 이후 인터넷게시판에서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 그 중에서도 심한 욕설을 동반한 악성댓글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우려했던 위축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한편 우지숙 등(2010)은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게시글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댓글에서는 비방과 욕설이 줄어드는 부분적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줬다. 반면 게시글 수 자체는 줄어드는 위축효과와 관련해서는 정통부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판 참여자 수가 감소했으며, 비상시적으로 글을 올리는 경계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경계시자 집단에서 욕설과 비방을 올리는 사례가 실명제와 무관하게 중·보통게시자 집단보다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연구자들은 실명제가 악플 감소라는 의도한 효과를 부분적으로 달성했으며, 공적 표현의 위축이라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연구자들은 욕설이나 비방 글은 익명여부라는 환경적 특성만이 아니라 게시자의 특성과 게시물의 내용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그 빈도가 달라짐 역시 경험적으로 입증했다.

그런데 게시판 이용자 ID와 게시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명제의 효과를 검증한 기존 연구들(우지숙·나현수·최정민, 2010; 이시원·민병익, 2002; 이현창 외, 2007)은 이 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반응 중 제도가 강제한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들에만 주목하고 있다. 즉 기존 연구에서 이용자들은 이 법이 적용되는 공간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와 참여한다면 법이 의도한 방식대로 의견을 표현할 것이냐의 여부 등만을 선택할 뿐이다. 사실 게시판의 게시글이 줄어드는 현상을 두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터넷실명제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라고 해석하고 있지만(박경신, 2009; 우지숙·나현수·최정민, 2010; 황용석, 2007), 게시물 감소는 일탈적 표현물의 통제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이 역시 어떤 측면에서는 실명제가 의도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게시판에서의 위축효과나 악플감소효과 등은 모두 크게 보면 제도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감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터넷에서 우리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제도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면서 익명성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는 그 길을 우회해서 익명으로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또는 공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우회로들을 통한 표현물들이 많아진다면, 실명제가 적용되는 공간의 표현물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터넷에서 공적 표현이 위축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실명제의 의도대로 게시판의 표현물들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하더라도, 우회로들을 통한 표현물들에서 그러한 변화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실명제의 효과는 결코 간단하게 결론지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인터넷실명제의 효과는 법이 만들어놓은 길만이 아니라 그 법의 적용대상자들 스스로 만들어낸 길들까지 포함해서 이 여러 대안들이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그런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적 차원에서 실명제 효과를 이와 같은 복합적인 과정의 결과로 접근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선행적 연구들이 미미한 상태에서, 이 복합적인 과정을 구성하는 변인들을 망라하고 그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특정한 가정들을 설정하는 작업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작업의 출발점으로서 이 연구는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선택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차이가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에 함의하는 바를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앞선 논의에서도 기술했듯이

13)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악성댓글 감소', 2007년 10월 4일.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은 그것이 어느 방향이든지 제도가 제시하는 길 위에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과 그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사뭇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이용자 특성이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와 국내 인터넷 환경변화, 그중에서도 이 제도의 주요 적용대상인 국내 포털들의 행위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글쓰기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이 행위에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이 제도에 대해 더 강한 태도를 형성하고, 포털의 행위변화가 가져오는 국내 인터넷환경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들이 어떤 태도와 인식을 형성하는가이다. 경험적 차원에서 그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들은 없지만, 이 부분은 인터넷 공론장 참여자의 특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 연구들(김은미·이준웅, 2006; 한혜경, 2005)에 의하면, 대체로 인터넷에서 정치시사 관련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타인의 글도 많이 읽으며, 두 행위 모두 높은 정치적 관심, 정치적 뉴스시사매체를 통한 정치적 정보추구, 일상생활에서의 빈번한 정치적 대화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인들 역시 온라인공론장 참여정도와 함께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와 포털의 행위변화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는 데 유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와 그로 인한 포털의 행위변화에 대해 보수와 진보 진영의 평가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정치이념과 함께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들 역시 이 제도와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만드는 주요 기준들이다. 기존 연구들(박경신, 2009; 성낙인·허진성, 2010)에 의하면, 진보 성향에서,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중요시하는 진영에서 이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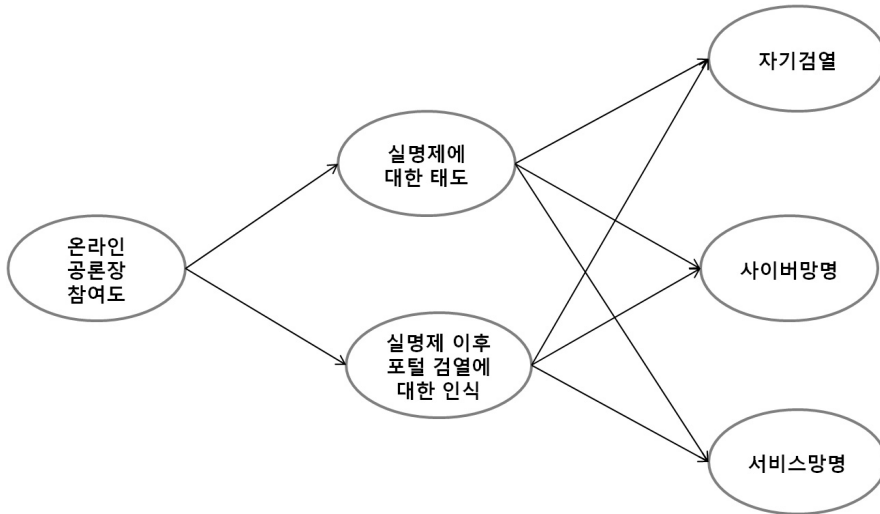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에서 제기된 변인들을 이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요인, 정치성향 요인, 뉴스매체 이용 요인, 온오프라인 공론장 참여 요인 등으로 유형화하여, 어떤 사람들이 이 제도에 찬성 또는 반대하고 국내포털의 행위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할 것이다.

<연구문제 1> 이용자 특성(인구학적 요인, 정치성향 요인, 뉴스매체이용 요인, 온오프라인 공론장 참여요인)은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 및 실명제 이후의 환경변화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아가 인터넷실명제 실시 이후 이용자들의 선택경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탐색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선택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인터넷실명제가 의도한대로 이용자 스스로 글쓰기에 조심하는 것, 즉 자기검열이 첫 번째이며, 이 제도의 적용을 피해 새로운 공간이나 서비스로 이전하는 ‘사이버망명’과 ‘서비스망명’ 등의 우회로가 그 나머지이다. 이 세 가지 선택대안은 상호배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즉, 글쓰기에 조심하면서도 사이버망명을 선택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선택대안들에 이르는 경로들을 탐색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 특성변인 중 온라인 참여정도를 구조방정식 모형의 외생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앞선 논의에서 기술했듯이 온라인 글쓰기와 글읽기 정도로 측정된 이 변인이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정치시사 관련 글들을 많이 읽고 쓰는 사람들을 온라인 공론장의 허브로 간주한다면, 이들이 인터넷실명제와 포털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어떤 길들을 따라가려하는지에 따라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연구문제와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온라인공론장에 대한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 및 포털행위변화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여러 대안들에 대한 선택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3. 연구방법

1) 표본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두 곳의 인터넷서베이 회사 패널 중 평소 인터넷에서 정치시사 관련 기사나 블로그, 토론게시판 글, 댓글 등을 읽거나 쓴다고 응답한 683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중순부터 2010년 7월 중순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실시되었다.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구성은 기존 연구들(김은미·이준웅, 2006; 한혜경, 2005)이 제시한 인터넷 공론장 참여자의 특성과 대체로 일치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59.3%(405명), 여성은 40.7%(278명)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 31.1%(212명), 30대 30.6%(209명), 40대 23.0%(157명), 50대 이상 15.3%(105명)으로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1.8%(12명), 고졸 23.9%(163명), 대졸 60%(410명), 대학원 졸 이상 14.3%(98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정치적 성향은 진보 37%(253명), 중도 35.7%(244명), 보수 27.2%(186명)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2) 변인측정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와 실명제 실시 이후 국내 포털들의 행위변화, 구체적으로 검열 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종속변인중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는 ‘악플과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해 인터넷실명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문항을 ‘매우 찬성한다’부터 ‘매우 반대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국내포털들 검열정도에 대한 인식은 ‘인터넷 실명제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를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 종속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정치사회적 성향, 미디어 이용, 오프라인-온라인공론장 참여도 등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군의 투입 순서는 기존 연구결과와 본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설정하였다. 신문/TV뉴스 이용의 매개변인적 기능을 보고하는 기존 연구 결과(McLeod, Scheufele, & Moy, 1999; Jeffers, Lee, Neuendorf, & Atkin, 2007)를 참고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정치사회적 성향 변인을 미디어 이용 변인들에 앞서 투입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역할을 밝힌 기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Shah, Cho, Eveland, & Kwak, 2005), 신문과 TV뉴스 등 전통적인 대중매체 이용 변인을 온라인/오프라인 대화 변인에 앞서 투입하였다.

각 변인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경우 성, 연령, 교육수준 등으로 구성된다.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했으며,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재학 이상 등 4점 척도로 측정했다. 둘째, 정치성향 요인은 정치관심과 정치이념, 기본권들에 대한 태도들로 구성된다. 정치관심은 평소 정치시사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정치이념은 매우 진보에서부터 매우 보수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측정했다. 기본권들에 대한 태도 중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부는 개개인의 생각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로, 프라이버시 보호는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 검경의 개인이메일 열람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에 대해 매우 찬성에서부터 매우 반대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다음은 뉴스시사매체 이용 요인으로, TV는 뉴스시사프로그램 일일평균 시청시간으로, 신문은 일일평균 구독시간으로 측정했다. 마지막은 공론장 참여요인으로 정치대화와 온라인 글쓰기와 글읽기로 구성했다. 정치대화는 평소 주위사람들과 정치시사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정도로 측정했으며, 온라인 글쓰기와 글읽기는 온라인에서 정치시사 관련 글(기사, 블로그, 토론게시판 글, 댓글 등)을 읽거나 쓰는 정도로 측정했다. 세 변인 모두 ‘전혀 하지 않는다’, ‘몇 달에 한 번 정도 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 ‘한 주에 한 번 정도 한다’, ‘매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다음으로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을 살펴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는¹⁴⁾ 설명력을 유지하되 분석의 간결성을 꾀하고자, 온라인 글쓰기와 글읽기로 구성된 공론장 참여정도를 외생변인으로, 인터넷실명제 태도와 포털검열에 대한 인식, 자기검열 정도와 사이버망명 의향과 새 서비스 이용의향 등을 내생변인으로 설정했다. 이 중 자기검열 정도는 ‘인터넷실명제 이후 글을 쓸 때 스스로 조심하게

14) SEM은 잘 정립된 이론이 없는, 또는 새로운 이론의 틀을 형성하는 단계에서도 매우 유용한 통계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강남준, 1999; 김두섭·강남준, 2008). “이론과 같은 넓은 영역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특정 현상에 대한 설명’에는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어(강남준, 1999, p. 7)” 연구자들은 논의의 진일보를 위해 이를 적용하였다.

된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한편, 사이버망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포털의 이메일 계정 이용을 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이메일과 같은 개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블로그와 같은 1인 미디어, 온라인 토론방과 같은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도구 등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로 자신의 주소를 옮기는 행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는 실제 조사에서 사이버망명 의향은 '인터넷실명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침해가 심해지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국 사이트로 내 계정을 옮길 있는가로 질문하였다. 한편, 서비스망명의 경우 이미 사용되고 있던 사이버망명이라는 표현을 차용하여 연구자들이 새롭게 만든 표현이다. 사이버망명이 이용자에게 익숙한 곳이지만 실명제가 적용되는 국내 사이트에서 낮설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국 사이트로 옮기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처럼, 게시판이나 토론방 등 익숙하지만 실명제가 강제되는 서비스들이 아닌, 다소 낮설지만 이용자 스스로 익명성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트위터처럼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라는 문항으로 질문하였고 이를 '매우 반대한다'부터 '매우 찬성한다'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측정했다.

4. 분석결과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인터넷실명제 유지에 대한 태도, 국내 포털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인식, 실명제 실시 이후 이용자의 자기검열 정도, 외국 사이트로의 사이버 망명 의향, 실명제 비적용 서비스로의 전향 의사,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개인 이메일열람 허용에 대한 태도,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악플과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전체 683명 중 441명으로 64.6%이었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93명(13.6%)으로 나타났다(평균: 2.28, SD: 1.122). 한편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 개인 이메일의 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8.2%가 반대의 입장, 22.8%인 159명이 찬성입장을 보였다(평균: 3.40, SD: 1.146). 표현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이 455명(66.7%)인 데 반해 반대 입장을 표한 응답자는 49명(7.1%)에 불과했다(평균: 3.95, SD: .973). 이상의 결과는 인터넷 공론장 참여자들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중시하면서도, 인터넷 공론장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응답중 약 65%가 인터넷실명제 유지에 찬성입장을 표명한 것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익명성은 그 부정적인 측면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실명제의 효과로서 국내 포털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그렇다'는 입장은 317명(46.4%)이었고 '그렇지 않다'는 입장은 104명(15.2%)로 나뉘었다(평균: 3.43, SD: .959).

<표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분포(%)		
		찬성	중립	반대
실명제 유지에 대한 태도	2.28 (1.122)	찬성	중립	반대
		441(64.6)	149(21.8)	93(13.6)
포털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인식	3.43 (.959)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104(15.2)	262(38.4)	317(46.4)
개인 이메일열람 허용(프라이버시 침해)	3.40 (1.146)	찬성	중립	반대
		159(22.8)	198(29.0)	329(48.2)
표현의 자유 보호	3.95 (.973)	반대	보통	찬성
		49(7.1)	179(26.2)	455(66.7)
실명제 이후 이용자의 자기검열 정도	3.59 (1.090)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116(17.0)	166(24.3)	401(58.7)
사이버망명 의향	2.99 (1.070)	반대	중립	찬성
		224(32.8)	268(39.2)	191(28.0)
실명제 비적용 서비스로의 전향 의사	3.29 (.956)	반대	중립	찬성
		106(15.5)	333(48.8)	244(35.7)

*모든 응답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기술통계분석에서는 응답의 분포를 보다 간결하게 찬성·중립·반대로 요약·제시하였음

인터넷실명제 실시 이후 온라인에서 글을 쓸 때 스스로 조심한다는 자기검열에 대해서는 58.7%에 달하는 401명의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평균: 3.59, SD: 1.090).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심해진다면 외국 사이트로 계정을 옮길지 여부를 묻은 사이버망명에 대해 응답자들은 중립(39.2%), 반대(32.8%), 찬성(28.0%) 순의 응답분포를 보였다(평균: 2.99, SD: 1.070). 또한 인터넷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로의 전향 의사를 가진 응답자의 비율도 35.7%로 나타났다(평균: 3.29, SD: .956).

2) 인터넷실명제 및 포털 검열에 대한 태도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점검

본 분석에 앞서 데이터상의 이상값(outlier) 유무를 검토하고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본 연구가 시행한 회귀분석은 두 개의 종속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상값의 유무는 각 변인별로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표준오차 잔차의 절대값이 3.0 이상인 개체를 이상점으로 간주하는데(서혜선 외, 2009, p.45). 실명제 유지에 대한 태도와 포털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식 등 두 종속변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이상값으로 판단되는 케이스는 나오지 않았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들 중 잔차의 정규성 검토에서는 정규확률 플롯(normal probability plot)을 그려본 결과 정규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예측값과 표준화 잔차의 잔차플롯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패턴이나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잔차의 등분산성 가정도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경우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에서 1.5수준으로 다중공선성의 수준은 허용할 만한 것이었다. 특히 공차한계(tolerance)의 경우, 모든 독립변인이 투입된 최종 단계를 기준으로 두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공차한계 범위는 각각 .671~.935과 .659~.935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은 허용할만한 수준이었다.

(2)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특성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로서 이 변인들은 통합적으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R^2 = .009$, $F = 3.166$, $p < .05$).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beta = -.084$, $p < .05$)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통제하고 정치적 신념,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결과, 이 2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인들도 통합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2 \text{ change} = .204$, $F = 26.848$, $p < .001$). 개별 변인 별로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할수록($\beta = .217$, $p < .001$), 정치적 관심이 클수록($\beta = .100$, $p < .01$)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권 중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유의미한 변인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인터넷실명제 유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58$, $p < .001$),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3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정치적 성향 및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 변인들을 통제하고 신문과 TV 뉴스 이용량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들 두 전통적 매체를 이용한 뉴스 소비는 통합적으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2 \text{ change} = .006$, $F = 21.564$, $p < .001$). 특히 TV뉴스/시사프로그램 시청량은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72$, $p < .05$).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투입된 모든 변인들을 통제하고 정치적 대화, 인터넷상에서의 글읽기와 글쓰기가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들 세 변인은 통합적으로 인터넷실명제 유지 여부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R^2 \text{ change} = .006$, $F = 16.621$, $p < .001$). 특히 온라인글쓰기는 개별적으로도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는데, 인터넷에 글을 많이 올릴수록 인터넷실명제 유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8$, $p < .05$).

<표 2> 인터넷실명제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변수	β	β	β	β
성별(남1, 여2)	-.041	-.040	-.038	-.036
교육	.068	.026	.024	.022
나이	-.084*	-.030	-.013	-.009
정치적 신념		.217***	.203***	.200***
정치적 관심		.100**	.118**	.104*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도		-.037	-.037	-.040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태도		.358***	.357***	.355***
TV시청량			-.072*	-.07**
신문소비량			-.029	-.035
온라인 글읽기				-.032
온라인 글쓰기				.080*
정치적 대화				.011
F change	3.166*	44.008***	2.619	1.615
adjusted R ²	.009	.210	.213	.216
R ² change		.204	.006	.006

*: $p < .05$, **: $p < .01$ ***: $p < 0.001$

(3) 국내 포털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터넷실명제 이후 국내 포털들의 검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먼저 1단계에 투입된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통합적으로 포털의 표현의 자유 제한 조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R²=.022, F=6.033, $p < .001$).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eta = 3.742$, $p < .001$) 인터넷실명제 실시 이후 포털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통제하고 정치적 신념,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에 따라 표현의 자유 제한 조치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2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인들도 통합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² change=.097, F=13.473, $p < .001$). 개별 변인별로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할수록($\beta = .133$, $p < .01$), 정치적 관심이 클수록($\beta = .145$, $p < .001$) 국내 포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심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또한 종속변인인 포털의 제한 조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이었다. 즉, 표현의 자유를 중시할수록($\beta = .146$, $p < .001$),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의식이 강할수록($\beta = .091$, $p < .05$) 국내 포털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점차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였다.

3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정치적 성향 및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 변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신문과 TV를 통한 뉴스 이용량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전통적 매체를 이용한 뉴스 소비는 통합적으로 국내 포털의 각종 제한 조치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² change=.005, F=10.979, $p < .001$). 특히 신문 소비량은 포털의 표현의 자유 제한 조치에

대한 인식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beta = -.070$).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투입된 모든 변인들을 통제하고 정치적 대화, 인터넷상에서의 글읽기와 글쓰기가 포털의 검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들 세 변인은 통합적으로 포털의 검열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R^2 \text{ change} = .004$, $F = 8.472$, $p < .001$), 개별적으로는 어떤 변인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 국내 포털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변수	β	β	β	β
성별(남1, 여2)	-.022	.012	.015	.016
교육	.143*	.109**	.112**	.106**
나이	-.070	-.008	.010	.014
정치적 신념		.133**	.119**	.114**
정치적 관심		.145***	.164***	.132**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도		.146***	.145***	.140**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태도		.091*	.087*	.083*
TV시청량			-.028	-.030
신문소비량			-.070	-.075
온라인 글읽기				.018
온라인 글쓰기				.028
정치적 대화				.047
F change	6.033***	18.584***	2.096	.958
adjusted R ²	.022	.113	.116	.116
R ² change		.097	.005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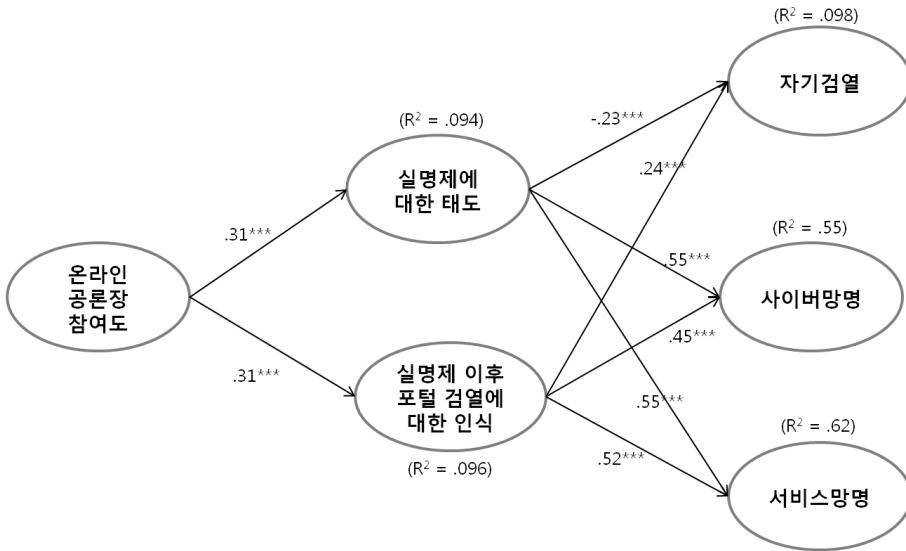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01$

3)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 분석: 자기 검열과 우회로 선택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문제 2>에서는 실제 인터넷공론장 이용자들의 태도와 의향을 통해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 및 여러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여러 대안들에 대한 선택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참여가 활발할수록 현 체도에 대한 반대 의사가 강하고 이후에 일어난 온라인환경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자기검열과 사이버망명 혹은 서비스망명 등 대안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용자들의 태도와 행동이 인터넷실명제 실시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까닭에 온라인공론장 참여도, 인터넷실명제 및 국내 온라인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실제 온라인공론장에 대한 태도나 행위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structural relationship)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연구자들은 <연구문제 2>의 검증을 통해 여러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기법을 사용하였다. 구조모형에서 온라인공론장 참여도

는 다른 변인들에게 영향만 줄 뿐 다른 변인들로부터 영향은 받지 않는 외생변인(exogenous variable)으로 정의하였고 실명제에 대한 태도, 환경변화 인식, 자기검열, 사이버망명, 서비스망명 등은 다른 변인들로부터 영향을 한 번 이상 받는 내생변인(endogenous variable)로 설정하였다. 변인들간의 구조경로 모형도(structural path diagram)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분석 결과 모형적합도는 $\chi^2=14.67$, $df=6$, $\chi^2/df=2.445$, $GFI=0.98$, $AGFI=0.92$, $CFI=0.93$, $RMSEA=0.046$ 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다.¹⁵⁾ 자기검열 변인의 설명된 변량은 9.8%였으며, 사이버망명과 서비스망명의 설명된 변량은 각각 55%, 62%로 나타났다.



*:p<0.05, **: p<0.01, ***:p<0.001, n.s: insignificant at the 0.05 level
 $\chi^2=14.67$, $df=6$, Normed $\chi^2=2.445$, $GFI=0.98$, $AGFI=0.92$, $CFI = 0.93$, $RMSEA = 0.046$

<그림 2>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 분석모형

온라인을 통한 공론장 참여가 활발할수록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반대하고 이러한 규제가 없는 외국 국정 사이트로의 ‘사이버망명’이나 새로운 기술 기반의 ‘서비스 망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명제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온라인에서 글을 쓸 때 자기검열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공론장 참여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이 제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수록 이 제도가 요구하는 바를 거부하는 반면 이 제도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행위들을 기꺼이 선택할 의향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공론장에 대한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 시행 이후 포털의 검열에 대해서도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공론장에서 자주 글을 읽고 쓸수록 국내 포털들이 표현의

15) 구조방정식의 모형의 적합도 검증지수 중 설명변량 비율지수를 의미하는 GFI와 AGFI와, 제안된 모형이 얼마나 자료와의 적합도를 증가시켰는가를 보여주는 적합도 증가지수는 .90 이상(김두섭·강남준, 2008), RMSEA는 .50 이하(Steiger, 1990)를 적절한 임계값(cut-off point)으로 본다. 간명적합지수라고 일컬어지는 χ^2/df 의 경우 일반적으로 3을 넘지 않으면 모형 적합도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다(배병렬, 2002).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강한 사람은 자기검열을 강하게 하면서 동시에 상황이 되면 사이버망명이나 서비스망명 등의 우회로들 역시 적극적으로 선택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제 이후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변인에서 각종 대안으로의 구조계수를 검토한 결과, 자기검열에 비해 사이버망명이나 서비스망명으로의 구조계수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¹⁶⁾

5. 결 론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기술에 내재된 속성인 익명성을 의도적으로 통제하여, 익명성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법이다. 법제도의 실효성은 그 법의 적용대상자들이 지닌 인식과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인터넷처럼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그 법을 우회할 수 있는 다른 선택대안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는 인터넷이용자들, 그 중에서도 인터넷공론장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실명제와 그로 인한 포털의 행위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이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먼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이 제도에 찬성 또는 반대하며, 그리고 이는 포털의 표현자유 침해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탐색했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정치성향, 뉴스매체이용, 공론장 참여 등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이용자 특성들은 종속변인들을 예측하는 데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정치에 관심이 많고 진보적일수록,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기본권들을 중시할수록, 온라인 공론장에 대한 참여가 빈번할수록, 인터넷실명제 유지에 반대하고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 포털들의 검열이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음으로 이용자 특성 요인 중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지닐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공론장 참여도를 외생변인으로 설정하고, 이 제도에 대한 태도와 포털 검열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이용자들의 선택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했다. 분석결과 온라인공론장 참여가 활발할수록 실명제 유지에 더 강하게 반대하고,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실명제 이후 특별히 글쓰기에 조심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반면, 해외사이트나 새로운 서비스로 우회할 의향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 공론장 참여가 활발한 사람은 실명제 실시이후 국내포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강한 사람이 선택하는 경로들은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것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포털의 검열을 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실명제 이후 자기검열을 더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우회로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자기검열적 태도가 인터넷 실명제가 당초 의도했던 결과라고 한다면 다양한 우회로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자들이 만들어가는 의도하지 않았던 대안들인 것이다. 실명제가

16) <그림 2>에 제시한 외생변인과 내생변인들간의 구조계수(structural coefficients)는 표준화계수로서 변인간 계수크기를 직접적으로 상호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두섭·강남준, 2008).

의도했던 대로 공적 게시판에서의 표현에서 자기검열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선택대안이 활발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이번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실명제에서 의도한 방식대로 공공적 게시판에서의 일탈적 표현이 줄어들고 스스로 자신의 글에 대한 검열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일견 보인다. 할지라도, 이용자들은 제도를 회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평가가 결코 간단하게 결론지을 수 없음을 확인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이 만들어놓은 길만이 아니라 그 법의 적용대상자들 스스로 만들어낸 길들까지 포함하여 이 여러 대안들이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가 바로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일 것이며, 이는 당초 의도했던 결과와 의도치 않았던 결과에 대한 교차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온라인공론장에서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포털의 각종 제한 조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우회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이용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특정 규제에 대한 평가가 공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는 인터넷실명제 유지 여부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와 구체적으로 정부의 개인 이메일 열람에 대한 태도가 다소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자들은 규범적 차원에서 인터넷실명제의 유지 여부를 물었을 때에는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정부가 필요할 경우 개인의 이메일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에서는 반대 입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이용자들의 이 같은 태도는 일반 이용자들의 인식이 규범적 차원과 구체적이고 상황적인 차원에서 상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터넷실명제라는 법제도로 제시되었을 때 이용자들은 이를 자신과 직접 연결시키기 보다는 자신은 관찰자(주체)일 뿐 해당 법제도의 규제대상(객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반면 개인의 이메일 열람가능성이나 포털의 표현의 자유 제한 조치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직면했을 때 이용자들은 스스로 관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규제의 대상이자 객체로 전락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우회로의 모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명제 찬성 여부로 질문했을 때와 포털의 제한 조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직면했을 때 이용자들의 경로선택은 동일하지 않았다. 즉, 게시물에 대한 자기검열의 수준은 실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국내 포털을 포함한 대형 사이트들을 통한 제한적으로나마 익명성을 통제하려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물론 인터넷 이용자의 다수가 이 제도에 찬성하며, 국내포털들 역시 게시물들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규제당국의 의도가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포털들을 통해 정부가 궁극적으로 규제하려 했던 대상인 인터넷이용자들,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글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온라인 공론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이용자들은 자기검열 못지않게 다른 우회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포털들의 제한조치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심하면서도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제한을 우회하는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인식과 행태에 대한 이해는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 판단에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실명제 등 인터넷을 둘러싼 각종 법제도의 평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했던 결과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기초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속칭 ‘신데렐라법’이나 게임사전심의 등 인터넷 관련 규제들 또한 이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용자들이 해당 법규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우회로를 모색하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가 향후 인터넷규제 관련 후속 연구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권영준 (2006).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스티스』, 91.
- 강경근 (2003). 인터넷언론과 선거. 『헌법학연구』, 9(3), 119~148.
- 김두섭·강남준 (2008). 『회귀분석』. 서울: 나남
- 김병운 외 (2008). 『디지털화와 산업의 양극화』,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김은미·이준용 (2006). 읽기의 재발견. 『한국언론학보』, 50(4), 65~94.
- 맹재진 (2003).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CLIS Monthly』.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_____ (2009).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 박경신 (2009).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15(3), 75~112.
- 박인우·김미향 (2000). 동기적 가상토론에서 익명성이 토론 내용의 논증과 부정적 발언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16(4), 91~106.
- 배병렬 (2002). 『구조방정식 모델: 이해와 활용』. 서울: 대경.
- 성낙인 (2005). 『헌법학』. 서울: 법문사.
- 오병일 (2003). 인터넷게시판 ‘강제’ 실명제의 문제점. 『시민과 변호사』, 16.
- 우지숙·나현수·최정민 (2010).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게시판 내 글쓰기 행위 및 비방과 욕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8(1), 71~96.
- 우지숙 (2005). 정보통제권에서 식별되지 않을 권리로: 네트워크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개념화를 위한 연구. 『언론과 사회』, 13(4), 110~145.
- 음수연 (2005). 온라인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 『정보통신정책』, 17(22).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성식 (2004).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언어플레이밍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경로모델의 제시와 검증. 『형사정책』, 16(2), 165~184.
- 이시원·민병익 (2002).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36(2), 205~229.
- 이항우 (2008).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과 인터넷 실명제. 『경제와 사회』, 79, 112~155.
- 이현창·원순우·김승택·김문수·주영환 (2007). 『제한적 본인확인제 효과분석을 위한 조사보고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전응휘 (2005). 인터넷 실명제 표현의 자유 위협, 사생활 침해 우려. 『국회보』, 465, 110~113.
- 조희정·강장목 (2008). 네트워크 정치와 온라인 사회운동: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3), 311~332.
- 조희순 (2008). 사이버악티비즘과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 한국촛불시위관련 게시판토론분석. 『제9회 정보문화포럼 발표문』, 7~32.
- 한상희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혜경 (2005). 인터넷 이용자의 시민주적 자질들과 가상공간의 숙의 경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9(4), 604~643.

- 허진성 (2009).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포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6(4), 235~273.
- 황성기 (2008).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법학논총》, 25(1), 7~37.
- 황용석 (2007).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언론과 사회》, 15(2), 97~130.
- 황창근 (2009).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 Barabási, A. (2002). *Linked: How Everything Is Connected to Everything Else and What it Means for Business, Science, and Everyday Life*. New York: Plume.
- Benkler, Y. (2006). *The Wealth of Network: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and Freedoms*, Cambridge: Yale University Press.
- Christopherson, K. M. (2006).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lications of anonymity in internet social interacti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3, 3038~3056.
- Lessig, L. (2009). 『코드 2.0』 (김정오 역). 서울: 나남. (원저 출판연도: 2006).
- Sassenberg, K., & Boos, M. (2003). Attitude change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Effects of anonymity and category norms.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6, 405~422.
- Shirky, C. (2008). Here Comes Everybody. 송연석 역(2008). 『끌리고 끌리고 들끓다』, 서울: 겐리온.
- Sproull, L. & Kiesler, S. (1991). *Connections; New ways of working in the networked organization*. MIT Press.
- Steiger, J.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 Suler, J. (2002). Psychology of cyberspace. <http://users.rider.edu/~suler/psycyber/psycyber.html>
- Tanis, M., & Postmes, T. (2005). A social identity approach to trust: Interpersonal perception, group membership and trusting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3), 413~424
- 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2010. 7. 21). 『인권오름』.
<http://hr-oreum.net/article.php?id=1508>
- 방송통신위원회 (2011. 3. 9). 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보도자료.
- 방통위, 시대착오적 인터넷실명제 사문화. (2011. 3. 8). 『한겨레』.
<http://www.hani.co.kr/popups/print.hani?ksn=466931>
- 남경필 ‘검찰이 인권침해’... 정두언 ‘나도 지메일, 사용’. (2009. 6. 12). 『프레시안』.
- 사이버망명 바람 솔솔.. 강풍될까. (2009. 4. 12). 『연합뉴스』.

McIntyre v. Ohio Election Commission, 514 U.S. 334, 341 (1995)

Talley v. California, 362 U.S. 60 (1960)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v. Villiage of Stratton, 122 U.S. 2080 (2002).

(투고일자: 2011.7.1, 수정일자: 2011.7.30, 게재확정일자: 2011.8.3)

ABSTRACT

Effectiveness of the Internet Real-Name Verification Law: Evidence from Self-censorship and Intention to Detour the Regulation

Hye Kyung Han* · Eujong Ki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Real-Name System on Internet, which has been applied to some Internet service provider bulletin boards in Korea. The goal of the Real-Name system on the Internet is controlling expression of slanderous or abusive languag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is dependent on the people's perceptions and attitude toward to the legislation. This empirical study examines the antecedents that affect the perceptions and attitude toward the regulation. Further,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such as internet public sphere participation, attitude to the regulations, and intention to choose detours.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younger and the more progressive individuals are, the more they oppose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Also, it was found that people who have more political interest and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public sphere via internet, tend to oppose the law. Structural equation models reveal that participation in online public sphere drives negative attitudes about the regulation. In addition, people with negative perceptions about the law tend to choose the detours such as 'cyber asylum' and 'service asylum'.

Keywords: Internet Real-Name Verification Law, Detour, Self-censorship, Cyber Asylum Service Asylum

* Professor,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Pukyung National University

** Doctoral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s, Yonsei University